

아산실버요양원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[입소정원 및 모집방법]

1. 입소정원은 92인으로 한다.
2.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[입소계약에 관한 사항]

1. 계약목적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. 단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
나.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 유효기간까지로 한다.

<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>
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구 분		금액(원/%)	내 역
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 100% ~ 80%	총 급여비용 중 감경률에 따라 100% ~ 80%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	개인부담금	총액의 20% ~ 0%	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경감대상자는 12%, 8% 로 경감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	10,500원/1일	1식당 3,500 원
	간식	0원/1일	1일 오후 (14:30 ~ 15:00)
	상급침실 이용료	2인 : 200,000/1월 1인 : 400,000/1월	수급자 선택
	이,미용 서비스	0	수급자가 외부 이미용서비스를 원할 경우 수급자가 부담함 (원내 자원봉사 이미용서비스는 무료적용함)

[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]

1.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입소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가.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나.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다.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② 입소자의 의무

- 가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나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다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라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마.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바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③ 입소자의 권리

- 가.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나.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다.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라.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마.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바. 안전하고 쾌적하며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사.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아.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④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가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나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다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라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마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⑤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가.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나.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다.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라.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[계약의 해제]

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.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[이용료 및 비용 변경]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

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[서비스내용]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.

1. 일상생활지원서비스
식사관리. 배설관리. 목욕관리. 구강관리. 두발관리. 손.발관리. 세면관리.
회음부관리. 옷 갈아입히기. 체위변경. 수면관리. 이동요양
2.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
일상편의대행. 의사소통지원. 여가지원(프로그램서비스)
3.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
건강관찰 및 확인. 투약관리. 치매관리. 간호 및 처치. 호스피스. 응급구호.
외래진료 및 입.퇴원관리. 예방관리. 협약기관 진료
4. 재활치료 지원서비스
일상생활동작훈련. 물리치료. 신체기능훈련. 작업치료 및 인지.정신기능훈련

[특별한 보호]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 -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 - 가.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 - 나.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

-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-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,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- ④ 합숙용(4인용)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 (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)

2.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

-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(산소공급, 석션 등)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.
-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

[의료서비스 처리절차]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- ①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

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③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- ④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2.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-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-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3.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

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
가.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
다.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가.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나.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
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가.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나.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.

다.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4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[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]

1.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.

[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]

본 아산실버요양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원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.

1.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-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

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-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
-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
-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
등급별 급여일수별 요양급여 적용 기준표

일반대상자 (본인부담금 20%)

등급	1일당	일수	급여비용	공단 부담액 (80%)	본인부담금 (20%)	간식비 (0*30)	식자재비 (3,500*3)	식재료비 합계	총 개인 부담금
1등급 (20%)	90,450	28	2,532,600	2,026,080	506,520	0	294,000	294,000	800,520
		30	2,713,500	2,170,800	542,700	0	315,000	315,000	857,700
		31	2,803,950	2,243,160	560,790	0	325,500	325,500	886,290
2등급 (20%)	83,910	28	2,349,480	1,879,590	469,890	0	294,000	294,000	763,890
		30	2,517,300	2,013,840	503,460	0	315,000	315,000	818,460
		31	2,601,210	2,080,970	520,240	0	325,500	325,500	845,740
3~5 등급 (20%)	79,240	28	2,218,720	1,774,980	443,740	0	294,000	294,000	737,740
		30	2,377,200	1,901,760	475,440	0	315,000	315,000	790,440
		31	2,456,440	1,965,160	491,280	0	325,500	325,500	816,780

경감 대상자 차상위 (본인부담금12%)

등급	1일당	일수	급여비용	공단 부담액 (88%)	본인부담금 (12%)	간식비 (0*30)	식자재비 (3,500*3)	식재료비 합계	총 개인 부담금
1등급 (12%)	90,450	28	2,532,600	2,228,690	303,910	0	294,000	294,000	597,910
		30	2,713,500	2,387,880	325,620	0	315,000	315,000	640,620
		31	2,803,950	2,467,480	336,470	0	325,500	325,500	661,970
2등급 (12%)	83,910	28	2,349,480	2,067,550	281,930	0	294,000	294,000	575,930
		30	2,517,300	2,215,230	302,070	0	315,000	315,000	617,070
		31	2,601,210	2,289,070	312,140	0	325,500	325,500	637,640
3~5 등급 (12%)	79,240	28	2,218,720	1,952,480	266,240	0	294,000	294,000	560,240
		30	2,377,200	2,091,940	285,260	0	315,000	315,000	600,260
		31	2,456,440	2,161,670	294,770	0	325,500	325,500	620,270

경감 대상자 차상위 (본인부담금 8%)

등급	1일당	일수	급여비용	공단 부담액 (92%)	본인부담금 (8%)	간식비 (0*30)	식자재비 (3,500*3)	식재료비 합계	총 개인 부담금
1등급 (8%)	90,450	28	2,532,600	2,330,000	202,600	0	294,000	294,000	496,600
		30	2,713,500	2,496,420	217,080	0	315,000	315,000	532,080
		31	2,803,950	2,579,640	224,310	0	325,500	325,500	549,810
2등급 (8%)	83,910	28	2,349,480	2,161,530	187,950	0	294,000	294,000	481,950
		30	2,517,300	2,315,920	201,380	0	315,000	315,000	516,380
		31	2,601,210	2,393,120	208,090	0	325,500	325,500	533,590
3~5 등급 (8%)	79,240	28	2,218,720	2,041,230	177,490	0	294,000	294,000	471,490
		30	2,377,200	2,187,030	190,170	0	315,000	315,000	505,170
		31	2,456,440	2,259,930	196,510	0	325,500	325,500	522,010